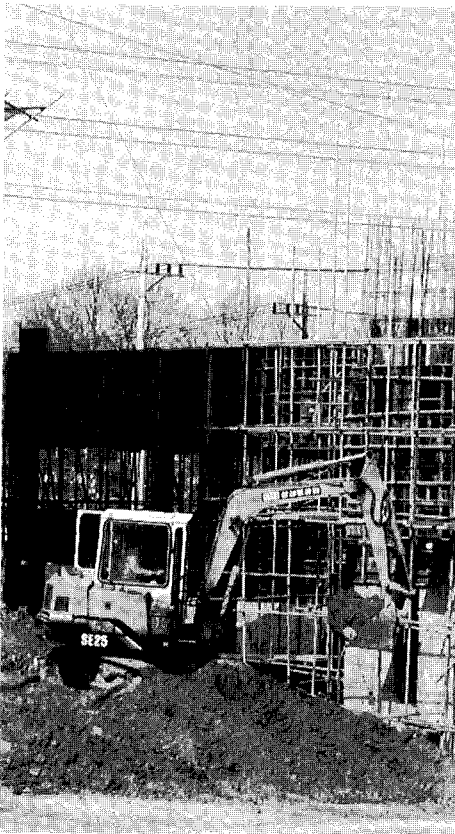


정부공사 입찰·계약제 개선안



□하도급자 보호강화

(1) 하도급금액의 직불제 도입

공사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원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하수급인이 원계약자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는 하도급 금액을 직불할 수 있음.

(2) 계약금액의 내용통보 의무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동의 이유로 계약내용을 조정할 때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수급인에게 조정 내용을 반드시 통보토록 의무화.

□공사 대가 지급지연이자

既定대가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준공대가는 20일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지연이자를 반드시 지급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현재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면제대상을 정부로부터 면허·허가 및 인가를 받은후 3년 이상 경과한 모든 법인으로 확대

□선금지급 이행보증금 납부면제

현재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인 면제대상을 중소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적용 대상 확정

예정가격 1백억원 이상의 교량·댐·공항건설·고속도로·간척·준설·항만·철도·지하철·터널·발전소 건설·쓰레기 소각로, 폐수하수 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14종

□지체 상금 상한액 설정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내는 지체 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 금액의 3~20%)에 달하면 원칙적으로 정부는 계약을 해지나 해제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목적물이 국가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적법한 노사분규 등 불가피할 사유가 있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지체 상금은 징수할 수 없게 함.

□입찰참가 신청서류 간소화

[1] 입찰 참가 때 면허·허가·인가 및 등록증의 원본을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본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

[2] 발주공사가 자재를 직접 구입해 시공자에게 제공할 경우 발주관서가 임의로 제공시기와 장소를 제공하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발주관서와 계약자가 서로 협의해 제공 시기와 장소를 결정.

법령과 고시

공종별 도급한도액 분리산정제도 내년 7월 시행

건설부는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키로한 공종별 도급한도액 분리산정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 중소건설업체의 영업활동에 미칠 충격을 덜어 주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행 4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하는 내용의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20일경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건설업법시행령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토·건도급한도액분리산정제도의 시행시기를 오는 94년7월1일로 1년간 늦췄다.

건설부는 자본금 증가 등에 따라 도급한도액 기준금이 변경된 때에는 건설업법시행령개정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중소건설업체보호를 위해 건설업면허없이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규모를 일반 및 특수공사의 경우 현행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500만원 미만에서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예외적으로 도급을 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행 4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덤핑투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예정가격 85% 미만인 금액으로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하도급대상공사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와 건물·교량·터널·댐 등과 같은 동일구조물공사를 2개 이상 분리해 동일업체와 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체공사금액에 대한 도급한도액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업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5백만원」을 「7백만원」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중 「4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

2. 건축물, 교량, 터널, 댐등 공사의 성질상 자체로서 한단위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동일구조물 공사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계속 계약하는 공사

제35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에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체결한 공사중에서 하도급한 공사인 경우

제54조 제1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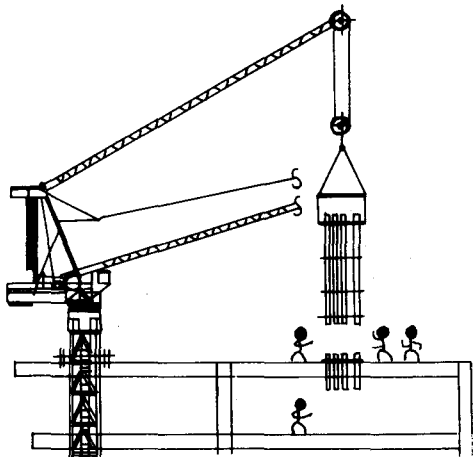
2의2.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수첩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중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의 하한의 기재

1992년12월26일 공포한 대통령령 제13,789호의 부칙중 「1993년7월1일」은 「1994년7월1일」로 한다.

〈부칙〉

② (도급한도액기준금 변경신고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자본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때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재해없는 산업사회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곳은 산업보건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건강진단 실시결과와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①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② 사후조치의 내용으로는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진단 결과의 역학적 검토,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작업수행 방법 등을 연구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원자재, 작업환경, 작업내용, 인간관계,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근로자 건강장해의 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사전에 근절하며,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피로, 교대제, 작업부하, 스트레스 관리 등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합니다.